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권위 전반적 체계 개선〉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17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인권위원 증원	3
2.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8
3.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15
4. 국가인권연구원 설립	20
5.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5
6. 조사대상 인권침해 범위 확대	28
7. 국회 선출 상임위원의 군인권보호관 겸직	34
8. 인권위원 의무 신설 및 가중처벌	39
9. 부 칙	43
※ 참고자료	4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미화 · 최혁진 · 문진석 · 윤준병 · 허 영 · 김교홍
김병주 · 차지호 · 이학영 · 강준현 · 추미애 의원
(11인)

2. 제 안 일 : 2026. 1. 29.

3. 회 부 일 : 2026. 1. 30.

※ 의안번호 : 164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인적 구성의 중립성 논란이 있음. 또한, 위원회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실효성 저하 등 기구 운영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 선출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성실 의무 명문화 및 위원의 업무 방해 시 가중 처벌 규정을 통해 위원회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원회 내·외부적 기능 저하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국가

인권기구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위원회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30조 및 제56조 등).

Ⅲ. 검토의견

1. 인권위원 증원

개정안은 국회 선출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함) 수를 4명(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명)에서 6명(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확대하여 인권위원 정원을 11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에서 13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9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u>11명의</u>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 <u>13명의</u> -----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 -----.
1. 국회가 선출하는 <u>4명</u>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1. ----- <u>6명</u> ----- -----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¹⁾에 따르면, 국가인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권위원회는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장관급) 1명 및 상임위원(차관급) 3명과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4명(상임위원 2명 포함)은 국회가 선출하고 4명(상임위원 1명 포함)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함.

①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위원장은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② 상임위원은 전원위원회 ·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③ 비상임위원은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²⁾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인 정책권고, 조사 · 구제, 교육 · 홍보, 국내외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³⁾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는 인권 관련 분야가 넓어지고 있고 인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2)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전원위원회 구성) 전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

제1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상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소위원회의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을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정하며, 각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결정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구 분	내 용
정책권고	◦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의 조사 · 연구 및 개선 권고 · 의견표명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 의견표명
조사 · 구제	◦ 국가기관(지자체, 학교 포함), 공직유관단체, 구금 ·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조사 · 구제 ◦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차별행위 및 성희롱 조사 · 구제
교육 · 홍보	◦ 국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 인권문화 확산 및 홍보
국내외협력	◦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 인권단체 등과의 협력 ◦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 · 협력

관련 분야의 전문화·세분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인권위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권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되, 그 중 국회 선출 인권위원을 4명(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명)에서 6명(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인권위원의 다양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고 인권위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라 선출·지명 기관별 인권위원 몫이 변경되어 선출·지명 기관별로 차지하는 인권위원 비율이 바뀌게 되는데, 개정안은 민주적 정당성과 함께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의 인권위원 선출 권한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과 비교하였을 때 개정안의 선출·지명 기관별 비율이 적절한 수준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2] 현행법 및 개정안 인권위원 구성 비교

구 분	현행법	개정안
전원위원회	11명 (국회 4명, 대통령 4명, 대법원장 3명)	13명 (국회 6명, 대통령 4명, 대법원장 3명)

둘째,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6개의 소위원회(침해구제제1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소위원회별 위원은 4명인데 상임위원 1명이 2개의 소위원장을 맡고 있고 비상임위원은 2개 또는 3개의 소위원회에 속해 있음.⁴⁾

[표-3] 소위원회 구성 현황⁵⁾

소위원회 명칭	위원 구성(4명)	분 야
침해구제제1위원회	오영근 · 한석훈 · 김용직 · 오완호	검 · 경 · 국정원, 입법부, 사법부
침해구제제2위원회	김학자 · 이한별 · 강정혜 · 소라미	구금 · 보호시설(장애인시설 제외), 기타 인권침해
아동권리위원회	김학자 · 한석훈 · 소라미 · 강정혜	만19세미만아동 (장애 제외)
차별시정위원회	이숙진 · 김용직 · 한석훈 · 조숙현	성희롱 · 차별행위 (아동 · 군 · 장애차별 제외)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이숙진 · 이한별 · 김용직 · 조숙현	장애차별,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군인권보호위원회	오영근 · 오완호 · 이한별 · 강정혜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 주: 상임위원(오영근 · 김학자 · 이숙진)이 각 소위원장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4)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2조(소위원회의 종류와 관장) ①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다음 각 호를 두어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침해구제제1위원회: 조사총괄과 관장 사항
2. 침해구제제2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관장 사항
3.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관장 사항
4.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및 성차별시정팀 관장사항
5.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및 장애차별조사2과 관장사항
6. 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보호국 관장 사항

② 소위원회는 소관 심의 · 의결사항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 명의로 심의 · 의결한다.

제23조(소위원회의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을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정하며, 각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결정한다.

5) 2026. 2. 13. 기준임.

한편, 개정안 제30조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인권침해의 범위를 확대(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 → 헌법상 기본권 전체)하고 있음. 확대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추가 설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조사대상 인권침해의 범위 확대와 연계하여 증원 대상(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 및 증원 인원 수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개정안과 유사하게 인권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⁶⁾

6) 인권위원 증원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433	신장식의원	인권위원의 정원을 15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9명)으로 증원
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016	윤종오위원	인권위원의 정원을 13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8명)

2.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개정안은 인권위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고, 국회·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 신설).

[표-4]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 분	주요내용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
기능	인권위원후보자 추천
위원 수	7명(위원장 1명 포함, 호선)
위원	○ 국회 선출 - 국회 추천 4명 및 시민단체 추천 3명 ○ 대통령 지명 - 대통령 추천 4명 및 시민단체 추천 3명 ○ 대법원장 지명 - 대법원장 추천 4명 및 시민단체 추천 3명
자격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소집요건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요청 ○ 추천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 ○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정족수	재적 과반수 찬성
추천 후보자 수 및 공개	3배수 이상, 추천 명단 및 이유 공개
자료제공 요청	후보자 소속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공 요청
준속기한	후보자 추천 시 해산

[표-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u>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 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u> <u>위원</u> 을 <u>선출·지명하여야 한다.</u> ⑤ ~ ⑧ (생략) <u><신설></u>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④ -----인 권----- ----- ----제5조의2의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u>위원</u> 을-----.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위원회에 <u>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u>추천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u> <u>위원을 선출·지명할 때</u> <u>마다 추천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한다.</u> ③ <u>추천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④ <u>추천위원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u> 1. <u>해당 위원후보자를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출·지명할 수 있는 자가 추천하는 4명</u> 2. <u>시민단체(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3명</u>

현행	개정안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추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천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추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선출 또는 지명할 위원의 3배수 이상을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명단 및 이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가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선출·지명⁷⁾한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식인데, 이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임명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⁸⁾

7)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멕시코, 아르헨티나, 네팔,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의 국가 인권기구에서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음(참고자료 1 참조).

또한, 2018년부터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7명 또는 9명의 위원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음. 후보추천위원회는 인권위원(위원장)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3~5명의 인권위원(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지명해왔음.⁹⁾

[표-6]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현황¹⁰⁾

위원명	구성일	후보추천위 구성 내역		추천인원
		인원수	구 성	
최영애 (위원장)	2018. 6. 15.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송두환 (위원장)	2021. 6. 13.	9명	대통령 추천 4,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 4	4명
안창호 (위원장)	2024. 7. 4.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5명
박찬운 (상임위원)	2019. 10. 18.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김용원 (상임위원)	2022. 12. 21.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8)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성 강화1: 독립성 보장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8, p.80

9)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을 받아 회의지원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법규나 지침 등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10) 2026. 6. 30. 기준임.

위원명	구성일	후보추천위 구성 내역		추천인원
		인원수	구 성	
오영근 (상임위원)	2025. 12. 17.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4명
문순희 (비상임위원)	2019. 6. 13.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서미화 (비상임위원)	2020. 2. 1.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김종민 (비상임위원)	2022. 9. 21.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4명
이한별 (비상임위원)	2023. 5. 26.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4명
오완호 (비상임위원)	2025. 9. 11.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김민문정 (비상임위원)	2026. 5. 8.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에 따른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하여 인권위원의 전문성과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서 202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 시 A등급 재승인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또는 다른 행정지침에 단일 독립선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권고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참고자료 2 참조).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기관과 위임법령 형식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는 단일 독립선출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4명)은 별개로 하더라도 국회 선출 인권위원(4명) 및 대법원장 지명 인권위원(3명)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된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이에 따라 국회 및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하게 되면, 외부적으로 국회 및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인권위원 선출·지명 기관을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으로 구분하여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현행법 규정¹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인권위원 선출·지명 기관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위임법령의 종류를 인권위원 선출·지명 기관의 법령체계에 맞추어 국회규칙·대통령령·대법원규칙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방안도 아울러 논의할 수 있을 것임.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참고로, 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에 설치되어 있고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으며, ②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고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 ③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및 ④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 설치되어 있고 관련 사항은 국회규칙에 위임되어 있음.

[표-7] 후보추천위원회 설치기관 및 위임법령 현황

후보추천위	설치기관	위임법령 형식	비 고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원	대법원규칙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검찰총장후보추천위	법무부	대통령령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제청
특별검사후보추천위	국회	국회규칙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장후보추천위	국회	국회규칙	-

둘째, 개정안과 유사하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¹²⁾

12)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31	진성준의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73	서미화의의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77	고민정의의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설치
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433	신장식의의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016	윤종오의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설치

3.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구성위원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에서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표-8]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생략)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출석과 출석 위원 전원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제2항¹³⁾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인권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⁴⁾

한편, 제12조¹⁵⁾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9조(상임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상임위원회는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소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와 소위원회(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① 전원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¹⁶⁾ ②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¹⁷⁾ ③ 소위원회의 종류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1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전원위원회 구성) 전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

제16조(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2.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에 제출을 건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법·시행령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상임위원회·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제1호에 관한 사항 중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사항
7. 법 제19조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8. 법 제28조에 관한 사항
9. 법·시행령·규칙에서 전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10. 상임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11. 그 밖에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사항

17)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9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구금·보호시설과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직권조사 개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소관 부서는 해당 소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 및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5.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6.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② 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관장사항 및 심의·의결사항¹⁸⁾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소위원회의 경우 현재 6개(침해구제제1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위원회별 위원은 4명임.

③ 상임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7호 및 제28조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18)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2조(소위원회의 종류와 관장) ①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다음 각 호를 두어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침해구제제1위원회: 조사총괄과 관장 사항
2. 침해구제제2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관장 사항
3.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관장 사항
4.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및 성차별시정팀 관장사항
5.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및 장애차별조사2과 관장사항
6. 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보호국 관장 사항

제25조(소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제3항의 직권조사의 개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사건 관련하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필요한 사항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조정위원회 회부, 법률구조의 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 구금·보호시설과 법 제50조의4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6. 전원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6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관한 사항

③ 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 회부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표-9] 소위원회 구성 현황¹⁹⁾

소위원회 명칭	위원 구성(4명)	분 야
침해구제제1위원회	오영근 · 한석훈 · 김용직 · 오완호	검 · 경 · 국정원, 입법부, 사법부
침해구제제2위원회	김학자 · 이한별 · 강정혜 · 소라미	구금 · 보호시설(장애인시설 제외), 기타 인권침해
아동권리위원회	김학자 · 한석훈 · 소라미 · 강정혜	만19세미만아동 (장애 제외)
차별시정위원회	이숙진 · 김용직 · 한석훈 · 조숙현	성희롱 · 차별행위 (아동 · 군 · 장애차별 제외)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이숙진 · 이한별 · 김용직 · 조숙현	장애차별,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군인권보호위원회	오영근 · 오완호 · 이한별 · 강정혜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합의제 정신에 기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2001. 5. 24. 제정, 2001. 11. 25. 시행) 당시에는 소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2005. 7. 29. 일부개정 · 시행)을 통하여 상임위원회 제도를

19) 2026. 2. 13. 기준임.

도입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3인’에서 ‘3인 내지 5인’으로 변경하면서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구성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였음.²⁰⁾ 이는 4명(위원장 및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새롭게 규정함과 동시에 소위원회의 법정 구성위원 수가 최대 5명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그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의결정족수 변경 연혁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전원에 의한 만장일치제로 변경하는 경우 의사 형성·결정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셋째,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²¹⁾

20)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2001. 5. 24. 제정, 2001. 11. 25. 시행) 제12조(소위원회) ②소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2005. 7. 29. 일부개정·시행)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②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②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 의결정족수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077	고민정의원	소위원회는 구성인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592	신장식의원	상임위원회·소위원회는 구성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016	윤종오의원	상임위원회·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4. 국가인권연구원 설립

개정안은 인권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의 체계적 수행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고 기능의 전문적 지원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연구원을 설립하고 인권 침해의 구조적·제도적 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표-10]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6조의3(국가인권연구원) ① 인권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의 조사·권고 등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권연구원을 둔다.</u> <u>② 국가인권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인권 침해의 구조적·제도적 원인에 대한 분석</u> <u>2. 위원회의 권고, 의견 표명, 정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u> <u>3. 국내외 인권 정책 및 제도의 비교·분석</u> <u>4.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u> <u>5. 새로운 인권 의제의 발굴 및 인권 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u> <u>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u>

현행	개정안
	하여 필요한 인권 연구에 관한 사항 ③ 국가인권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그 밖에 국가인권연구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4호·제6호 및 제7호²²⁾에 따라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주로 연구용역을 통하여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²³⁾ 실태 조사 및 연구 등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2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3) 2026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 조사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분야	과제명	예산
일반과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34-301)	인권상황 실태조사(일반과제)	221,000

있다는 지적이 있음.²⁴⁾

연구원을 두고 있는 국가기관에는 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감사원(감사연구원), 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행정안전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이 있음.

개정안은 국가인권연구원을 설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고 등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²⁵⁾

구분	분 야	과제명	예 산
특정 과제 (14)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34-301)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분야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실태조사	60,000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032-301)	사법부 공무원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60,000
	취약분야 인권개선 (1033-301)	어업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50,000
		노인 자살위험자 조기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70,000
		노인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실태조사	60,000
		취약계층 가정 아동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70,000
		아동청소년대상 혐오차별 실태조사	70,000
	장애인 인권증진 (1033-302)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실태조사	57,000
		지역사회 전환 등 장애인 탈시설 이행 상황 실태조사	57,000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1033-303)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70,000
		비혼 출산 여성 자기결정권 및 양육지원 실태조사	70,000
	군인권 보호 및 증진 (1033-304)	군대 내 일·가정 양립 근무 환경 및 현황 실태조사	55,000
		군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55,000
	북한인권 개선 (1034-303)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조사사례 분석 실태조사	45,000
소계(특정과제)		849,000	
기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34-301)	국가인권통계 분석 등 연구용역	100,000
		국가인권 통계 조사	500,000
총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4) 김동현,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제언」,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전망 세미나 발표자료, 2025, p.70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인권연구원의 설치 근거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²⁶⁾는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연구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속기관²⁷⁾으로 판단되므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직제)에 설치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그런데, 부속기관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에 두는 경우(국가데이터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도 있는 반면,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입법례(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감사연구원 등)²⁸⁾도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 제2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25) 국가인권연구원장의 직급·직무 등은 국가인권교육원과 동일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의2(국가인권교육원) ③ 국가인권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6)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2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8)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인권교육원도 부속기관에 해당함.

에서 국가인권연구원의 수행 업무를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 연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서 열거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 밖의 수행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6호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⁹⁾

29) 국가인권교육원은 그 밖의 수행 업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의2(국가인권교육원) ② 국가인권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지원 및 관리
4.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5. 그 밖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개정안은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표-1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7조의2(국제인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국제적 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그 규범의 내용 및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제출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7호 및 제9호³⁰⁾에 따라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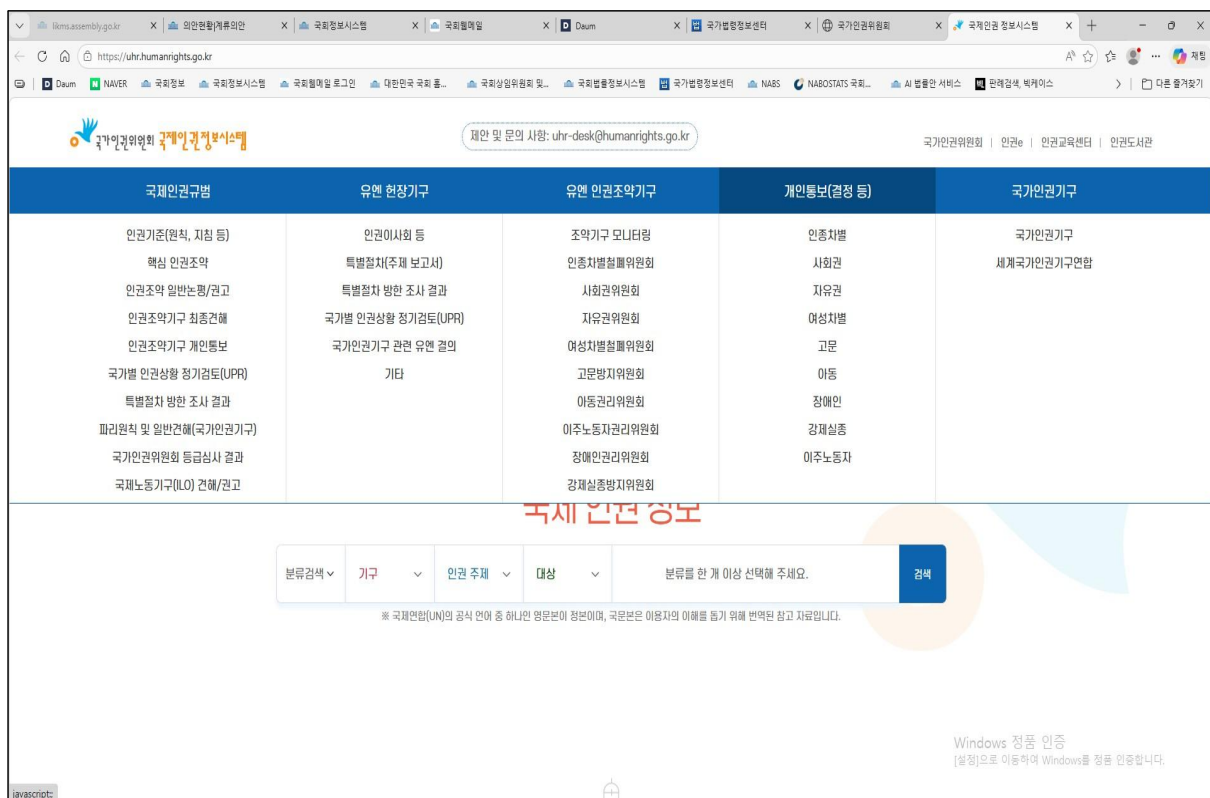
3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건의 표명,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24년 3월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시스템에서는 주요 국제인권규범(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일반논평, 개인통보, 국제인권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국영문으로 일반에 제공하고 있음.³¹⁾

[표-12] 국제인권정보시스템 초기 화면



31) 국제인권정보시스템 제공 자료 현황(2026. 2. 6. 기준)

구 분	국제인권규범	유엔헌장기구	유엔인권조약기구	개인통보(결정 등)	계
자료 수(국영문)	904	2,205	342	117	3,568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정사건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을 2019년에 구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시스템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3³²⁾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구축 목적, 실제 운영 상황,³³⁾ 안정적 운영의 필요성과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관련 시스템의 법적 근거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³⁴⁾

32) 2024. 12. 3. 공포·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신설되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33)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의 2025년 접속 건수는 449,028건임.

34)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관련 규정인 제26조의2(국가인권교육원), 제27조(인권도서관) 다음에 조문(제27조의2)을 배열하고 있는데, 규율 내용상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다음으로 이동하여 규정(제21조의2)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조사대상 인권침해 범위 확대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인권침해의 범위를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에 대한 침해에서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에 대한 침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표-1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 ----- ----- -----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1. ----- ----- ----- ----- ----- ----- ----- ----- ----- ----- ----- 「대한민국헌법」에서-----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³⁵⁾는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30조제1항제1호³⁶⁾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을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있음.

즉, 현행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36조까지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권) 중에서 자유권적 기본권(포괄적 기본권 포함, 재산권 제외)만 해당하고,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및 사회적 기본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표-14]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상 분류(제10조부터 제36조까지)

구 분	헌법상 기본권
포괄적 기본권	○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제11조: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 제12조·제13조: 신체의 자유권 ○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3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구 분	헌법상 기본권
	○ 제16조: 주거의 자유 ○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18조: 통신의 자유 ○ 제19조: 양심의 자유 ○ 제20조: 종교의 자유 ○ 제21조: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정치적 기본권 (참정권)	○ 제24조: 선거권 ○ 제25조: 공무담임권
청구권적 기본권	○ 제26조: 청원권 ○ 제27조: 재판청구권 ○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사회적 기본권	○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 제32조: 근로의 권리 ○ 제33조: 노동3권 ○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제35조: 환경권 ○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모성보호 및 보건권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인권침해의 범위를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한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전체 기본권으로 확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기본권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구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인권 보장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2001. 5. 24. 제정, 2001. 11. 25. 시행) 당시부터 자유권적 기본권에 한정되었는데, 조사대상 범위는 제정 당시 입법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였음.

당시 조사대상을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 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한 인권’으로 하는 의원발의법률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 전반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법원, 검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여성부, 노동위원회, 감사원 등 기존의 국가기관과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³⁷⁾되었고, 결국 조사대상을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으로 하는 제정안³⁸⁾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제정 이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범위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한정·유지되어 온 연혁적 의의와 제정 당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사회적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기구를 통한 비사법적 구제절차인 진정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로는 멕시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공화국, 필리핀, 나이지리아가 있음.³⁹⁾

37)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법안 검토보고(이미경의원 대표발의)」, 2001, p.13

38) 정대철의원 대표발의안 및 이인기의원 대표발의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

39)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 방안 연구-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인권위 조사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2023, pp.151~163

둘째, 기본권은 그 내용상 분류에 따라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① 정치적 기본권(참정권)은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행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소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치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기본권이고,⁴⁰⁾ ② 청구권적 기본권은 실체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기본권적으로 보장하는 절차적 기본권이며,⁴¹⁾ ③ 사회적 기본권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정의 또는 실질적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과의 관련성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재정적 뒷받침이라는 현실적 조건을 구비하여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기본권과 구별되는 기본권임.⁴²⁾⁴³⁾

이와 같은 정치적·청구권적·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에 비추어, 이러한 기본권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침해행위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조사를 통하여 실제적인 구제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과 유사하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인권침해의 범위를 헌법상 기본권 전체로 확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⁴⁴⁾

40) 허영, 「한국헌법론」(진정20판), 박영사(2024), p.621

41) 장영수, 「헌법학」(제15판), 홍문사(2024), p.559

42) 장영수, 「헌법학」(제15판), 홍문사(2024), p.558

43) 재산권의 경우 민사·형사·행정상 절차를 통한 처벌·구제절차 및 법률구조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재산권을 포함하는 것은 구제절차상 혼란 가능성, 절차의 중복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노회찬의원 대표발의)」, 2018, p.10).

44) 조사대상 인권침해 범위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162	김예지의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인권침해 범위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대

7. 국회 선출 상임위원의 군인권보호관 겸직

개정안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표-1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군인권보호관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⁴⁵⁾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고 있음.⁴⁶⁾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면서, 군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군부대 방문조사, 사망사건 조사·수사 입

4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군인권보호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말한다.

46) 2016. 6. 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2015. 12. 29. 제정)되어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2. 7. 1.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2022. 1. 4. 일부개정)되어 군인권보호관의 조직·업무 및 운영 관련 사항이 법제화되었음.

회, 긴급구제 조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16] 군인권보호관의 조직 및 권한

구 분		주요내용
조직	군인권보호관	○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겸직 ○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군인권보호위원회	○ 군인권 침해예방 등 수행하는 소위원회
	지원조직	○ 군인권보호관 업무 지원을 위하여 사무처에 설치 ⁴⁷⁾
권한	진정사건 조사	○ 군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군부대 방문조사	○ 군인권보호관 등의 군부대 방문조사
	사망사건 수사 입회	○ 사망사건 조사·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등 입회 요구
	피해자 보호조치 (긴급구제 조치)	○ 위원회등은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

참고로,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한 2022. 7. 1. 이후 2026. 2. 6.까지 군부대 방문조사 현황, 사망사건 수사 입회 현황, 긴급구제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2회 군부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469건의 사망사건 통보에 대하여 197건 입회하였으며 11건의 긴급구제를 처리하였음.

그런데,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고 있어,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 문제를 정부측 입장에서 바라볼 개연성이 있어 군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⁴⁸⁾

이에 개정안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군인권보호관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업

47) 군인권보호국(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의 3개 과단위 조직으로 구성)에서 지원하고 있음.

48) 이승택, 「군인의 인권과 군인권보호관제도」, 법학연구 제24권제1호(2024. 3.), p.114

무를 보다 독립적·능동적으로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군인권보호관의 지위 및 임명 문제는 제21대 국회에서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할 당시 쟁점사항 중 하나였음.

당시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안’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 1명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선출하는 안’을 병합 심사하였는바, 국회에서 군인권보호관을 선출하게 되면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정치적·이념적 논쟁이나 대립이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이 군인권보호관을 지명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이 제기⁴⁹⁾되었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현행과 같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게 되었음.

[표-17] 제21대국회 군인권보호관 지위·임명 관련 개정안 내용

조승래의원안	배진교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 겸직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 겸직 (위원 2명 증원)	국회 선출 상임위원 중 1명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선출 (위원 2명 증원)

49)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록(2021. 11. 29.), p.4
발언 취지 및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장을 정리하였음.

따라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변경할지 여부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당시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논의사항 등과 개정안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제5조제1항의 상임위원 중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임위원 3명 중 국회는 2명의 상임위원을 선출⁵⁰⁾하고 있어 국회 선출 상임위원 2명 중 누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게 되는 것인지 법문상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수진의원안의 경우 국회 선출 몫 상임위원 중 1명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음.⁵¹⁾

또한, 국회에서 상임위원 2명을 선출하는 경우 통상 소속 국회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와 그 다음으로 많은 교섭단체(제2교섭단체)로부터 후보자를 각각 추천받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

5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51) 이수진의원안 제51조(군인권보호관) ② 국회는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 1명을 제1항의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선출한다.

출하고 있는데,⁵²⁾ 제1교섭단체와 제2교섭단체 중 어느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과 유사하게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말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⁵³⁾

52) 가장 최근 국회 선출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였음.

53) 국회 선출 상임위원의 군인권보호관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691	박지원의원	국회 선출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 겸직
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433	신장식의원	국회 선출 상임위원 중 군인권보호관 임명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016	윤종오의원	국회 선출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 담당

8. 인권위원 의무 신설 및 가중처벌

개정안은 ① 인권위원의 공정·성실한 직무 수행 등의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② 인권위원이 인권옹호 업무방해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56조제3항 신설).

[표-18]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② (생략) <u><신설></u>	<u>제6조의2(위원의 의무)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 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위원일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인권위원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 다양성·다원성이 확보되고 인권에 관한 전문성·감수성을 갖춘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그 직무에 전념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야 하는 인권위원이 인권옹호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전문성 및 감수성이 문제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⁵⁴⁾

개정안은 인권위원의 공정·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등을 명시하고 인권위원이 인권옹호 업무방해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에 관한 전문성·감수성을 갖춘 인권위원이 공정·성실하고 책임성 있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인권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인권위원의 가중처벌(안 제56조제3항)과 관련하여,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⁵⁵⁾에 따라 인권옹호 업무방해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인권위원이 인권옹호 업무방해죄를 범한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됨.

54)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의 행위와 관련한 감사」, 2025, pp.7~8

5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한편, 범행주체의 법적 지위나 소속을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원범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로는 「노인복지법」(노인복지시설종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보호·감독자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호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 및 「장애인복지법」(보호·감독자 등) 등이 있음.

[표-19] 범행주체 가중처벌(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입법례

법률명	조 문	원범죄	가중적 구성요건
「노인복지법」	§59의2	노인 대상 상해·폭행·성폭행· 성희롱 등	(범행주체) 상습범 또는 <u>노인복지시설종사자</u>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행주체) <u>보호·감독자 등</u>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	아동학대범죄	(범행주체) <u>보호자</u>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31①	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등	(범행주체) <u>원자력발전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u>
「장애인복지법」	§88의2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범행주체) 상습범 또는 <u>보호·감독자 등</u>

따라서, 인권위원의 인권옹호 업무방해 시 불법성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의 방해 방지라는 인권옹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⁵⁶⁾ 가중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 현행 법률의 가중적 구성요건과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인권위원 가중처벌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56)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20, p.489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인권옹호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주체인 인권위원의 범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신분을 이유로 한 가중처벌 및 ‘2분의 1까지 가중’이라는 가중방식은 「형법」 등에 유사 입법례가 있으며, 그 가중의 정도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9. 부 칙

개정안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인권위원 선출·지명,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직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표-20]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지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선출·지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지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군인권보호관의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상임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안 부칙 제1조는 개정안의 모든 조항이 ‘공포한 날’에 같이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의2제9항 및 안 제27조의2의 경우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안 제26조의3의 경우 국가인권연구원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규모 및 정원 등에 관한 관계 부처 협의 및 실제 인력 배치 등 준비행위도 필요하며, 안 제56조제3항의 경우 가중처벌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 등에 대해서는 적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⁵⁷⁾

문 의 처

02)6788-5017

- 57)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참고 1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관련 국내외 참고사례

□ 해외 인권기구의 후보추천위원회 현황

지역	국가	정치체제	후보선출위원회 설치
미주	멕시코	대통령제	국회
	아르헨티나	대통령제	국회
아시아태평양	네팔	내각제	헌법이사회
	말레이시아	내각제	총리실 · 국가인권위 공동
	인도	내각제	총리 · 의회 공동
	인도네시아	대통령제	국가인권위
	필리핀	대통령제	국가인권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내각제	국회
	케냐	대통령제	대통령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국내기관의 후보추천위원회 현황

후보추천 위원회	설치기관 (법적근거)	위원 구성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10명)	대법원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제1항)	○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각 1명 ○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1명 이상은 여성)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9명)	법무부 (검찰청법 제34조의2제1항)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각 1명 ○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1명 이상은 여성)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7명)	국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각 1명 ○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후보추천 위원회	설치기관 (법적근거)	위원 구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7명)	국회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밖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다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을 경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위원으로 위촉

권고: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A등급 재승인을 권고한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승인소위는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는 파리원칙 및 이번 등급심사 기간 중 승인소위가 제시한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틀과 일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 국제·지역·국가 차원의 관련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인권기구와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지속할 것을 독려한다.

승인소위 참고 사항:

1.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그 중 2명은 상임),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그 중 1명은 상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인권위원을 임명한다.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식(인권위원 임기만료)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그러나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은 3개의 선출·지명기관에 의해 적용되는 일관되고 공식화된 단일 선출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며, 국회는 정당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대법원은 시민사회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는다고 보고했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음을 인정한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또는 다른 행정지침에 단일 독립선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독려한다.

국가인권기구의 의사결정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 절차를 관련 법률, 규칙 또는 구속력 있는 행정지침에 적절히 규정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의 고위직에 대한 독립성과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과 기반의 선출을 촉진하고 다원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1과 국가인권기구 의사결정체의 선출 및 임명에 관한 승인소위의 일반견해 1.8을 참고한다.

2. 재정 자율성

승인소위는 「국가재정법」 제43조 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승인소위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강조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고, 채용, 예산 및 회계를 포함한 특정 관행들을 규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국가가 국가기관들이 공적 자금(예산)의 사용에 대해 적절히 책임지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균일한 규칙이나 규정을 마련한 경우, 그러한 규칙이나 규정을 국가인권기구에 적용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독립적 및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인정하
며,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인 노
력을 할 것을 독려한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2와 국가인권기구의 행정규정에 관한 승인소위의 일반
견해 2.7을 참조한다.

참고 3 군인권보호관 활동 현황

□ 군부대 방문조사 현황⁵⁸⁾

연번	사건번호	조사개시 결정일	사건명	경과
1	22-방문-0000400	'22. 8. 23.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상황 개선 권고	종결
2	23-방문-0000100	'23. 2. 28.	동부전선 격오지 부대 방문조사	종결
3	23-방문-0000600	'23. 5. 30.	해군 격오지(함정) 방문조사	종결
4	23-방문-0000900	'23. 8. 29.	2023년 군 구급시설 방문조사	종결
5	23-방문-0001000	'23. 9. 26.	군기교육대 방문조사	종결
6	23-방문-0001100	'23. 11. 28.	여군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군부대 방문조사(공군, 육군)	종결
7	24-방문-0000400	'24. 2. 29.	육군사관학교 병영부조리 예방을 위한 방문조사	종결
8	24-방문-0000500	'24. 3. 29.	해병대 장병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방문조사	종결
9	24-방문-0000700	'24. 4. 30.	여군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군부대 방문조사(GOP)	종결
10	24-방문-0000800	'24. 6. 25.	육군 12사단 신교대대 운영 관련 방문조사	종결
11	24-방문-0001000	'24. 7. 23.	공군 격오지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방문조사	종결
12	24-방문-0001100	'24. 7. 23.	2024년 군 구급시설 방문조사	종결
13	24-방문-0001300	'24. 11. 27.	제17 공군 전투비행단 전대장 성폭력 등 방문조사	종결
14	25-방문-0000100	'25. 1. 23.	다문화 및 해외 장기 거주 장병 등의 인권 증진을 위한 방문조사	종결
15	25-방문-0000500	'25. 4. 2.	해군 함정 근무 여군의 처우·환경 관련 방문조사	조사중
16	25-방문-0000600	'25. 4. 2.	군 안전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방문조사	종결
17	25-방문-0000700	'25. 4. 2.	사관학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방문조사	종결
18	25-방문-0000800	'25. 4. 2.	군 사망사건 발생부대 장병 관리체계 방문조사	조사중
19	25-방문-0000900	'25. 5. 7.	12. 3. 비상계엄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	종결
20	25-방문-0001500	'25. 7. 25.	2025년 여성 간호장교 인권 및 처우 관련 방문조사	조사중
21	25-방문-0001700	'25. 9. 19.	후반기 교육기관 도움·배려병사 관리체계 관련 방문조사	조사중
22	25-방문-0001800	'25. 9. 19.	군무원 처우·환경 점검을 위한 방문조사	조사중

58) 군부대 방문조사는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전에도 실시되었는데, 2020년에 1회(사건명: 2020 군 구급 시설 방문조사), 2021년에 1회(사건명: 2021 군 교정시설 방문조사) 실시되었음.

□ 사망사건 통보 및 입회 현황

(단위: 건)

구 분	사망사건 통보					위원회 대응			
	자해 사망	병사	사고사	기타	소계	입회	기초 조사	소계	진정 접수
'22.7.1.~12.31.	35	26	19	-	80	28	52	80	10 (직권 1)
'23.1.1.~12.31.	68	41	16	1	126	53	73	126	9 (직권 1)
'24.1.1.~12.31.	77	46	21	1	145	62	83	145	7
'25.1.1.~12.31.	51	46	13		110	50	60	110	3
'26.1.1.~2.6.	4	3	1		8	4	4	8	0
계	235	162	70	2	469	197	272	469	28 (직권 2)

□ 긴급구제 처리 현황⁵⁹⁾

연도	사건번호	제목	종결일	결과
2022	22-긴급-0001100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긴급구제	'22. 8. 16.	긴급구제조치 권고
2023	23-긴급-0002000	군인 사망사건 군수사 관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긴급구제	'23. 8. 18.	긴급구제조치 하지 않음
2024	24-긴급-0000900	군 지휘관의 부당 처우 및 인권침해 등	'25. 1. 9.	긴급구제조치 하지 않음
2024	24-긴급-0001700	예비군 동원 보류자의 예비역 진급대상 제외 부당	'24. 8. 5.	긴급구제조치 하지 않음
2025	25-긴급-0000500 25-긴급-0000600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및 서신 수발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25. 2. 18.	긴급구제조치 하지 않음 (정책권고)
2025	25-긴급-0001800	군의 부당한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25. 5. 29.	긴급구제조치 미상정 종결
2025	25-긴급-0001900	국군병원 환자에 대한 긴급 조치 요청	'25. 6. 20.	긴급구제조치 미상정 종결
2025	25-긴급-0002100	육군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 조사 등	'25. 7. 4.	긴급구제조치 미상정 종결
2025	25-긴급-0002200	군 성고충 사안 조사 시 적법 절차 위반 등	'25. 7. 7.	긴급구제조치 미상정 종결
2026	26-긴급-0000700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인권침해	'26. 1. 27.	긴급구제조치 미상정 종결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2022. 7. 1. ~ 2026. 2. 6.)

59) 긴급구제는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전에도 처리되었는데, 2020년에 1건(군 복무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 긴급구제조치 권고), 2021년에 1건(군인, 부당 전출명령 및 강제이주 상황 긴급구제: 긴급구제조치하지 않음) 처리되었음.